

第134回(臨時會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

第2號(附錄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目 次

1.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(案)	1面
○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(案) 檢討報告書	3面

1.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95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9. .
제 출 자 : 남재경 의원 외 5인

1. 개정이유

-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'간사'를 각각 두고 있으나,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회의체 내에서 '간사'라는 명칭은 그 표현이 매우 구시대적이고 부적절한 용어 표현이기에 의원의 위상과 의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좀더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'간사'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개정(안 제12조)
○ 다른 규칙의 개정(부칙)
-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 및 제58조의 “간사” 명칭 변경(→부위원장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동법 제63조

4. 예산수반사항 : 예산조치 필요없음

5. 개정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중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, 동조제2항 중 “간사는”을 “부위원장은”으로, 동조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58조제3항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【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위원회조례】 제12조(간사)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	【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위원회조례】 제12조(부위원장) ①-- 부위원장 1인-----. ②부위원장은----- -----. ③----- 부위원장이 ----- -----
【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회의규칙】 제48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 제58조(위원회 회의록) ①~②(생략)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·날인한다.	【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회의규칙】 제48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----- ----- 부위원장과 ----- 제58조(위원회 회의록) ①~②(생략) ③----- ----- 부위원장이 -----